

국내 기술 유출 및 보호 현황과 과제

조 윤 애
(연구위원 · 산업경쟁력실)
yacho@kiet.re.kr

〈요 약〉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은 기술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아, 핵심 기술을 빼내어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들로 인하여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휴대폰 등의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하여 LED, PDP, LCD 등 부품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갖게 되면서 기술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술 관련 기업비밀을 특허나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데,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수준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기술 유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즉 재판과정에서 영업비밀 노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 산업스파이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예방적 대응으로서 기업 스스로의 영업비밀 보호 노력을 촉구하여야 한다. 첫째, 영업비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보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 교육, 지도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으로 하여금 종업원과의 고용계약 등을 통해 종업원에게 경업금지 의무나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자신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셋째, 하청기업과의 거래, 공동 연구, 컨설팅 의뢰 등 다른 기업이나 조직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도하지 않게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넷째, 기술유출의 대부분은 인력의 이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인력이동의 원인은 더 좋은 근무 조건에 있기 때문에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하여 기술 유출을 유발하는 인력이동 자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

1. 머리말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은 기술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아, 핵심 기술을 빼내어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들로 인하여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정보통신의 발달은 기술을 포함한 무형 자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기술유출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경제의 정보화·지식화가 촉진되면서 무형 자산이 기업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와 같은 추세는 첨단 기술 및 정보통신 산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의 발달로 무형 자산이 전자적 수단으로 저장되면서 쉽게 복사되고 유출되고 있다. 즉 디지털 비디오 및 오디오 레코더와 같이 정교하면서도 값이 비싸지 않은 기록장치가 많이 개발·보급되는 것도 정보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는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므로 기술개발 결과가 경쟁기업의 수중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경쟁

기업으로 자신의 기술이 유출될 경우 기업의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 관련 기업비밀에 대한 침해로 제소를 당한 기업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책임이 입증될 경우 상당한 손해배상액의 지불 이외에 기업 이미지의 실추라는 무형의 손실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휴대폰 등의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하여 LED, PDP, LCD 등 부품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갖게 되면서 기술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유출이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 및 보호 현황과 이에 대한 정책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술 보호와 영업비밀

(1) 기술 보호의 경제적 의미

기술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생산요소이고, 기술 자체가 부가가치가 높은 최종 생산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기술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 보호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즉 유형 생산물의 경우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소유권자의 배타적 사용이 보장되지만 기

술과 같은 무형 생산물은 본질적으로 소유권자의 배타적 사용이 용이하지 않다. 이로 인하여 기술은 공공재적 속성과 외부성(externality)을 가지게 되면서 모방, 모조, 복제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남용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 무임승차된다면 아무도 시간과 돈을 들여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술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줌으로써 기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독점적으로 전유(appropriate)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하에 기술개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술 창출에 매우 중요하다.

기술은 제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영업비밀 등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다.¹⁾ 이러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기술의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한편,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지적재산권으로 기술을 보호하는 경우 기술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데, 이로 인하여 기술의 확산과 활용을 촉진시켜 더 많은 기술이 창출될 수 있다. 새로운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발명을

가능하게 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회 전반에 확산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지식 스톡(knowledge stock)을 증대시킨다.

즉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수집·정리되고 공개되는 정보들은 그것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하여 더욱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기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술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국가간 이동을 원활하게 해 준다. 국가간 기술 이동은 기술이전, 직접투자, 전략적 제휴, 상품수출 등의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술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어야 국가간 기술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보호가 기술의 창출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기술의 확산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창출과 확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술 보호를 너무 강화하면 확산이 저해되고,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보호를 너무 완화하면 창출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1)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고,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으로,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다시 구분된다. 이외에도 기존의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과 보호대상 및 보호의 절차적 방법이 다른 신지적재산권이 있다. 여기에는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 생명공학기술,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된다.

(2) 기술 보호와 영업비밀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기술 유출은 영업비밀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2항)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적 유용성)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 관리성) 생산방법·판매방법·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²⁾이다.

기업이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수단이다. 특허의 경우 공개를 전제로 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게 돼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구제가 비교적 용이하다. 반면, 영업비밀은 비밀유지에 관한 책임이 기업에게 돌아가 사후보상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기술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비밀유지를 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영업비밀은 다음의 경우에 특허보다 선호된다. 첫째, 모방 및 유용 가능성이 높아 기술 내용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둘째, 사업상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셋째, 오랫동안 비밀을 유지해야 할 경우, 넷째, 특허등록대상이 아니거나 그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3.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 및 보호 현황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 및 보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2003년 말 현재 국가 연구기관에 1건 이상 연구의뢰를 한 적이 있는 전기·전자업체와 자동차(부품 포함)업체들이다.³⁾

(1) 기술 유출 현황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핵심기술 보유가 크게 늘면서 우리 기업들의 핵심기술을 비롯한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⁴⁾

2) 동법에 의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상의 정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정보 등을 포함하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설계방법, 설계도면, 실험데이터(실패한 실험데이터 포함), 제조기술, 연구 레포트 등이다. 또한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고객 명부, 거래선 명부, 판매계획, 입찰계획 등이 있다.

3) 설문 문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연구소 산업기밀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2003. 12를 참조하였다.

4) 우리나라 기술 유출 사례는 <http://www.artisanupspy.co.kr/main02-click-01.htm> 참조.

〈표 1〉 기술 관련 기업비밀을 유출시킨 관계자

	퇴직사원	협력업체 종사자	경쟁업체 종사자	잘 모름
구성비(%)	61.5	30.8	15.4	15.4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2004. 3.

- 주 : 1) 복수 응답. 전체 응답업체수는 기술유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13개 업체.
 2) 구성비 = 항목별 응답 업체수 / 전체 응답업체수

〈표 2〉 기술 관련 기업비밀의 유출 경로

	구성비(%)
핵심인력 스카우트	38.5
복 사	30.8
시찰 및 견학	15.4
전화 팩스 도청	15.4
사내 전산망(e-mail)	7.7
공동연구	7.7
관계자 매수	7.7
해외생산 개시 및 확대	7.7
잘 모름	7.7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2004. 3.

응답업체 161개 업체 중 8.1%인 13개 업체가 기술 관련 기업비밀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출된 건수로는 총 15건이 있었는데, 이 중 13건이 국내, 2건이 해외로 유출된 것이었다. 해외로 유출된 2건은 모두 중국기업으로 유출된 것이다.

기업의 기술 관련 기업비밀을 유출시킨 관계자는 퇴직사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 관련 기

업비밀을 유출시킨 관계자는 퇴직사원이 61.5%로 가장 많았고, 협력업체 종사자가 30.8%, 경쟁업체 종사자가 15.4%, 누구에 의해 기술이 유출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15.4%이었다.⁵⁾

기술 관련 기업비밀의 유출경로는 핵심인력 스카우트에 의한 것이 38.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복사 30.8%, 시찰 및 견학, 전화·팩스 도청이 15.4% 순이었다.

기술 관련 기업비밀이 유출되는 주

5) 국가정보원은 최근 7년간 적발한 산업기밀 유출사건을 분석하여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① 전 현직 종사자에 의한 유출, ② 경쟁기업의 핵심기술인력 스카우트에 의한 유출, ③ 컨설팅 및 기술자문업체에 의한 유출, ④ 유치과학자·기술연수생 등에 의한 유출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nis.go.kr/kr/include/branch.jsp?menu_id=M15030100 참조.

〈표 3〉 기술 관련 기업비밀이 유출되는 주요 원인

	구성비(%)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장비 미흡	38.5
핵심기술인력 부당스카우트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미흡	38.5
일선 연구원 보안의식 부족	30.8
보안관리 감독체계 허술	30.8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정부의 법제도적 장치 미흡	30.8
개인적인 재산상의 이익추구	30.8
경영진의 보안의식 부족	23.1
연구원에 대한 낮은 급여로 인한 이직	7.7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2004. 3.

요 원인으로는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장비 미흡과 핵심 기술인력 부당스카우트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미흡이 각각 38.5%로 높았다.

(2)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현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체적인 핵심 기술 보호방안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많지 않은데 이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기업의 적발능력과 증거수집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술 관련 기업 비밀을 특허나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다. 특허로 보호한다는 기업이 전체의 62.7%, 영업비밀로 보호한다는 기업이 전체의 62.1%이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실시하는 보안관리 내용은 패스워드·디스켓 관리(64.0%)가 가장 많고, 외부인사 출입 제한(59.6%), 거래업체와 비밀 유지 계약(58.4%), 서랍 사무실 시건 장치 설치(57.1%), 입사시 비밀엄수 서약(57.1%) 순이다. 반면, CCTV, 침입방지시스템 설치(23.0%), 정보보안업체에 아웃소싱(22.4%), 보안담당 부서 구성(20.5%) 등 보다 적극적인 보안관리를 실시하는 업체는 30% 미

〈표 4〉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 관련 기업비밀 보호 형태

	특허	영업비밀	실용신안
구성비(%)	62.7	62.1	40.4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2004. 3.

주 : 1) 복수응답, 전체 응답업체수는 161개 업체임.

2) 구성비 = 항목별 응답 업체수/전체 응답 업체수

〈표 5〉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시하는 보안관리 내용

	구성비(%)
패스워드 및 디스켓관리	64.0
외부인사 출입제한	59.6
거래업체와 비밀유지 계약	58.4
서랍 사무실 시건장치 설치	57.1
입사시 비밀엄수 서약	57.1
카드키 설치	52.2
문서보안관리시스템 운영	51.6
보안관리규정 마련	49.1
문서 세단기 설치	49.1
퇴사시 비밀유지 및 경쟁업체 취업금지 서약	47.8
보안담당자 지정	39.8
정례 보안관리 교육	39.1
방화벽 설치	38.5
정례 보안점검 및 감사	34.2
CCTV, 침입방지시스템 설치	23.0
정보 보안업체에 아웃소싱	22.4
보안담당부서 구성	20.5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5.0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2004. 3.

만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비밀 보안관리 수준은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유출에 따른 보안의식 강화로 철저한 보안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⁶⁾

(3)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제도

우리나라의 기업비밀 유출 방지는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의 보호 규정이 도입되었다. 1998년 12월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개칭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민사 및 형사 구제 수단이 실질적으로 확립되었다. 그 후 2001년 및 최근 2004년 1월의 개정을 통해 민사 및 형사 구제 수단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우리나라 대기업을의 기업 비밀 보안관리에 대한 사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연구소 산업 기밀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2003. 12 참조.

첫째, 대부분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퇴직 임직원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처벌대상이 기업의 재직 중인 임직원은 물론 퇴직 임직원 나아가 모든 위반자로 확대, 규정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한 모든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하여 종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1억원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이 강화되었다.

셋째, 영업비밀 보호 대상이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업의 특유한 생산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에서 경영상 영업비밀로 확대되었다.

넷째, 영업비밀 보호 위반에 대한 공소에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다. 즉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기업의 존립기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004년 개정을 통해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다. 또한 미수범과 예비·음모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은 우리 기업에 보다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1998년의 법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해서는 가장 처벌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여섯째, 기업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경쟁 기업의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에 대해 2004년 법개정에서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자 이외에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도입되었다.

일곱째, 민사적 규제와 관련하여 1998년 개정에서는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손해액의 추정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1년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해액의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등에 기초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 침해 여부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에의 접근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4. 향후 정책 과제

(1)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첫째, 현행법에 대한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범을 목적범으로 규정함으로써 고의범에 한정하고 있는데, 중대한 과실

로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유출시킨 경우에도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의 해외유출에 있어서는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산업스파이 행위가 증가하는데, 산업스파이 행위에 개입된 외국 정부의 기관이나 직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⁷⁾

둘째, 재판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노출방지를 위한 제도의 도입 필요하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이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절차 등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추가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미국의 1996년 “경제스파이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술 유출 관련 소송절차에 있어 비밀유지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산업스파이의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사례를 보면 영업비밀 침해자들의 국외 도피가 많았다. 따라서 외국으로 도피한 영업비밀 사범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범인인도협정 체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형사사범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형사사범공조협정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밖에 무역관

련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해서는 WTO 체제를 활용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에서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2) 기업 스스로의 영업비밀 보호 노력 촉구: 예방적 대응

첫째, 영업비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보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 교육, 지도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기업 스스로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것이다. 기업내의 비밀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특히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영업비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영업비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업 스스로 영업비밀을 관리하도록 한다.⁸⁾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의

7) 미국에서는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국인(기업 포함)은 물론 외국인(외국정부기관 포함)에 대해 엄한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1996년 별도의 경제스파이법을 제정, 시행하여 오고 있다.


8) 일본 정부는 글로벌화의 진전, 인재의 유동화, 정보화의 진전 등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국내외의 경쟁기업으로 유출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손상되고 있다고 인식하여 그 보호를 위한 대책을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체제도 허술하다. 현재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전자, 생명공학, 화학, 정보통신, 기계 등의 분야에서 기업,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산업보안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업은 종업원과의 고용계약 등을 통해 종업원에게 경업금지의무⁹⁾나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자신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현행법에서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기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종업원 등이 외부에서 경업하는 경우) 공개하는(제3자에 대한 누설) 행위 등을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등을 인정

하고 있다.¹⁰⁾ 다만, 이러한 제반 조치는 경우에 따라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저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의도하지 않은 기술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하청기업과의 거래, 공동 연구, 컨설팅 의뢰 등 다른 기업이나 조직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도하지 않게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넷째, 기술유출의 대부분은 인력의 이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인력 이동의 원인은 더 좋은 근무 조건에 있기 때문에 핵심 기술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하여 기술 유출을 유발하는 인력이동 자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보안관리시스템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 기술 인력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 정부는 관련법의 개정뿐 아니라 ‘참고되어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영업비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국내업체간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것은 “영업비밀관리지침(2003.1.30)”에서, 해외생산이나 기술이전 등 국외업체와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것은 “기술유출방지지침(2003.3.14.)”에서 다루고 있다.

- 9) 경업금지의무란 종업원이 퇴직 후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 10) 미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요시하여 종업원의 전직 자체를 제한하는 계약의 집행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법원의 판례를 통해 전직 종업원이 새로운 직장에서 불가피하게 또는 부주의로 종전 고용주의 영업비밀을 이용, 의존 또는 공개하게 될 경우 전직 종업원으로 하여금 경쟁회사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불가피한 공개이론(the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이 수립, 확산되고 있다. 동 이론은 종업원의 전직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의 방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한 공개이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 논의가 있고 일반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